

부산광역시 사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가. 산업 활동으로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실정에서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구 등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지구환경 위기 해결에 부합하고자 하며
- 나. 2004. 12. 31일자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코자 함

2. 관련법령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주요골자

-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설치·운영(안 제5조)
- 나.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수립(안 제10조)
- 다.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구매실적 관리(안 제11조, 제12조)
- 라.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관리(안 제13조)
- 마. 관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제15조)
- 바. 평가, 포상, 시행규칙(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4. 검토의견

본 조례 제정 건은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여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고 장려함으로서 전구민이 친환경적인 상품을 선호하고 상용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와 애국애민정신 함양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되며
-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산물인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을 방지 하고 웰빙시대에 걸맞는 친환경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국민건강증진과 정서순화에 부응함으로써 국산품애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기업사랑과 나라사랑의 기폭제가 된다고 판단됨
- 또한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난 2007. 8. 8 조례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강원도 동해시를 비롯하여 경남 김해시와 통영시 등 35개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고, 북구 등 여타 시·군·구에서도 입법예고 등 준비 중에 있으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이 명시 되어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

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2008. 5. 26

도시전문위원 정 금 배